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4. . .	
연월일	(제 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고,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당시 합동묘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뿐만 아니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가 안장되는 묘소까지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56호, 2024. 2. 27. 공포, 2025.2.28.)으로 안장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안장 심사를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중 “보훈지청장”을 “보훈지청장(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6의 부분 중 “그 지정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를 “합동묘역 내의 묘”로 한다.

제8조 제1항 2호의 부분 중 “12명”을 “1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하 “합동묘역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u>보훈지청장</u> 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묘역소유자등이 2명 이상이면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단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 ----- ----- ----- ----- ----- ----- ----- ----- <u>보훈지청장(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 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u> ----- -. ----- ----- ----- -----.
제2조의6(국가관리묘역의 관리) ① (생략)	제2조의6(국가관리묘역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대상은 <u>그 지정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와 기념관, 현충탑 등의 부대시설로 한다.</u>	② ----- ----- <u>합동묘역 내의 묘</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색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 중 <u>12명</u>	2. ----- ----- ----- 13명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